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01 발의연월일: 2024. 12. 11.

발 의 자:이정문・문진석・황명선

이학영 • 문금주 • 한민수

이연희 · 임광현 · 이인영

조승래 · 김원이 · 박수현

박 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독립기념관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, 이사 중일부 또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독립기념관 장과 이사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,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요청 규정이 미비하여 독립기념관장의 직 무태만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 회의 중립성을 담보하고,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 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 보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7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가"를 "제7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"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 국회의원"을 "지명하는 민간 전문가"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임원추천위원회) ① 제7조에 따라 독립기념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.

-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선임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
- ③ 독립기념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다. 다만,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사람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한다.
-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

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",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"를 "또는 제36조제2항에"로 한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해임요청 등)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기념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.
 - 1.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- 2.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독립기념관의 운영에 지 장을 초래한 경우
 - 3.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 임명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임원) ① (생 략)	제7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관장은 <u>「공공기관의 운영</u>	②제7조의2에 따른 임
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	원추천위원회가
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	
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	
한다)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	
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	
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	
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	3
각 호의 사람이 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국회의장이 <u>각 교섭단체 대</u>	3 <u>지명하는 민간</u>
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 국	<u>전문가</u>
<u>회의원</u> 4명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7조의2(임원추천위원회) ① 제7
	조에 따라 독립기념관의 임원
	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독
	립기념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
	<u>둔다.</u>
	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
	선임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----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<신 설>

- 1. (생략)
-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제35조 제2항 · 제3항,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 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

- ③ 독립기념관의 임직원과 공 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이 될 수 없다. 다만, 「교육공 무원법」에 따른 교원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 임하는 사람의 정수는 임원추 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한다.
-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)

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- 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<u>3.</u>			
	또는	제36조저]2항
<u>에</u>			

니한 사람 ②·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
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 제10조의2(해임요청 등) 국가보훈 부장관은 독립기념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 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.
 - 1.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

 행위를 하는 경우
 - 2.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독립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- 3.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판단되는 경우